

# 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6. 8. 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11. 11. 송재봉의원 등 19인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6. 3. 9.) 상정 · 제안설명  
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435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6. 5. 20.)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수정  
가결)

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6. 5. 20.) 상정 · 소위심사  
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송재봉의원)

현행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항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·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,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 개입으로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,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8조제3항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성소미)

현행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<sup>1)</sup>에서

---

1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분쟁의 조정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·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21조에 따른 약정서,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

2.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

2의2.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

3.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

는 납품관련 약정서, 납품대금 연동, 납품대금 지급 및 위탁기업의 준수 사항 이행 등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

동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<sup>2)</sup>하여 위탁기업 등에게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권고·시정 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지급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<sup>3)</sup> 등과 같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 등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

---

4.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

5.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

2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5.12.2. 본회의 의결)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는 경우 그 내용을 ‘검토 또는 조사’(현행 ‘검토’)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2026년 6월 3일 시행될 예정임.

3)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제25조(시정조치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, 제3조의4, 제3조의5, 제4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,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특약의 삭제나 수정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지인 것으로 이해되며,

현행법에서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범위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 없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시정권고·시정명령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는 경우 법 집행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참고로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과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<sup>4)</sup>과 같이 시정조치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.

중소벤처기업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동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. 또한,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도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운영중에 있고 하위법령 개정 등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 ‘공포 후 6개월’로 정하고 있는 시행일을 ‘공포한 날’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#### 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---

4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7조(수탁·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)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 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사실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김원이 위원)

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분명한 시정권고·명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하는 측면이 있고, 하위법령 개정 등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동일한 조항에 대한 시행예정 법률(2025.11.13. 의결, 법률 제21191호)의 시행일(2026. 6. 3)로 수정함.

## 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.

## 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## 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심사를 거쳤음

### 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1.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2.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 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5. .

제 안 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##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분명한 시정권고·명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고, 하위법령 개정 등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동일한 조항에 대한 시행예정 법률(2025.11.13. 의결, 법률 제21191호)의 시행일(2026. 6. 3)로 수정하려는 것임(안 부칙).

#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모두개정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률 제21191호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·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거나 명할 수 있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”을 “2026년 6월 3일”로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 제2119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8조(분쟁의 조정) ① . ② (생략)<br>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·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 | 제28조(분쟁의 조정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·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 | 제28조(분쟁의 조정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<br><u>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·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거나 명할 수 있다.</u><br>④ . ⑤ (현행과 같음)<br>부칙<br>이 법은 공포 후 | 제28조(분쟁의 조정) ① . ② (개정안과 같음)<br><u>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·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거나 명할 수 있다.</u><br>④ . ⑤ (개정안과 같음)<br>부칙<br>----- |

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| 6개월이 경과한<br>날부터 시행한다. | -2026년 6월 3일<br>-----.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·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8조(분쟁의 조정) ① · ② (생략)<br><u>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 ·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</u><br>④ · ⑤ (생략) | 제28조(분쟁의 조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br><u>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 ·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.</u><br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|